법률상식 ⑨

# 형사소송의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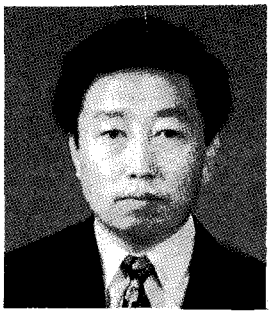

**김 상 배**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 과장

## 1. 왜 알아야 하는가.

형사사건 이라는 말에서는 범법,범죄,처벌,형벌등 불길한 내용이 연상된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러한 용어를 즐겨하지 않고 되도록 피하려 하게 된다. 또 우리는 어떻게든 법을 지키고 다툼을 피해 이러한 불길하고 어려운 형사문제와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내가 피하고 싶다고하여, 또는 나만 조심한다고 하여 형사사건을 피할 수는 없다.

먼저 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 관련되는 것을 피하려 해도 상대방의 범법행위 대상이되어 피해를 입는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막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흔히 범법행위란 상습적인 범죄꾼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자신이 뜻하지 않은 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목장의 분뇨처리를 법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환경관계 법규를 위반한 꼴이 될것이고 가축의 진료나 치료, 출하, 절박도살 등의 과정에서 가축위생과 방역관계 법규나 식품위생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피의자가 될수 있는 것이다.

또 자동차나 트랙터 운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초지조성과 관련한 산림법, 농지법 저촉관계등 일상생활에서의 법규위반 위험은 어디에나 있는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 예기치못한 사고등을 보더라도 우리가 형사문제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만 만약의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하여 불이익을 줄일수 있는 것이다.

## 2. 형사사건의 용어와 절차

▶ 범죄와 수사 : 국가는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될일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 법을 어길때는 그것을 범죄라하여 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범죄사건이 일어 났을때 그것을 조사하는 것을 수사라고 한다.

▶ 수사기관 :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은 검사가 맡는다.

어떤 사건이 있을때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려야하고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수사 책임은 판사와 똑같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검사가 맡도록 하는것이다.

그리고 수사 실무는 사법경찰 관리가 맡게 된다. 사법경찰 관리는 일반적인 사건을 맡는 경찰이 있고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등 특별한 분야의 사건만을 담당하는 특별 사법경찰 관리가 있다.

▶ 수사개시 :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되는 동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피해자의 고소, 목격자의 고발등 범죄신고나 신문과 방송의 보도, 현장을 목격한 경찰이나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자, 범죄사실, 증거등을 수사 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라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처벌 할수 없을때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될때에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

▶ 입건, 피의자, 용의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공식화 되는 것을〔입건한다〕고 한다.

일단 입건이 되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은 〔피의자〕가 된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그것이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그 조사를 〔내사〕라 하고 수사 대상자를 〔용의자〕라고 한다.

내사를 계속하여 범죄의 증거를 발견하고 입건할 경우 용의자는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 체포 , 영장 :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근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 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 하게 된다.

피의자를 체포 하려면 판사가 발부하는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영장은 보통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다시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체포이유와 죄질, 피의자의 신분과 성격, 사건의 내용등을 살펴 신중을 기하는데 보통 체포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때문에 판사의 영장을 기다릴만큼 여유가 없을때에는 그 이유를 알려주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는데 이를〔긴급체포〕라 한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범죄직후에 있는 사람을 〔현행범인〕 또는 〔현행범〕이라 하는데 이러한 범죄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고 또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체포한 범죄자를 곧 바로 수사기관에 넘겨 주어야 한다.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그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 했을 때에는 피의자를 석방토록 하고 있다.

▶ 구속과 불구속 : 수사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가 도망 가거나 범죄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때는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구속은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지는데 먼저 범죄의 증거가 있어야하고 반드시 판사의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 할것인가 말것인가를 판단하기위해 영장 청구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고 필요할경우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신문하기도 한다.

그리고 요즈음은 인권보호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구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송치 :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기록과 증거물, 체포한 피의자를 검찰청에 보내게 되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한다.

그것은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내용이나 경중에 관계없이 검사가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일반인들은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받고 종결된것으로 알았는데 검찰에서 다시 부르므로 당황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경찰관이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을 붙이는 것을 송치의견 이라하는데 검사의 최종판단은 송치의견과 다를 수 있다.

즉 경찰의 의견은 검사가 참고 할뿐, 사건의 결정은 검사의 책임이고 권한인 것이다.

▶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를 채택하였는 바, 석방의 요건, 집행절차 등은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 형사사건의 상식은 2회에 걸쳐 설명합니다. 〉

# 큰 소리 한번

유리온실은 몇년동안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새로운 농사시설이다. 그리고 형태나 건축방법, 재료등이 하도 다양하고 새로워서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 온실에 말썽이 생겼다. 충청도에 사는 최선생은 유리온실을 이용한 첨단농업을 계획하고 뜻이 맞는 사람 여섯을 더 모아 정부보조금과 융자금등을 이용해 공사비만 2억원이 넘는 대규모 온실을 지었다.

그리고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시설을 최첨단으로 하였다.

특히 무겁고 깨지기쉬운 유리대신에 신제품인 2중 PET